

제13기 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소집일자	2019.10.14.(월)
소집방법	전화, 문자메시지

1. 일시 및 장소 : 2019년 10월 21일(월) 11:00~11:30 / 문화관 2층 대회의실

2. 참석의원

구분	인원	의원명단	배석
참석	11명		기획조정처장, 서기
불참	1명		

3. 회의내용

가. 개회 : 의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의장이 11시에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자문사항 :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

- 의장이 자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, 기획팀장이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(안)에 대해 수입부 및 지출부의 계정과목별 예산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다.
-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(안)은 다음과 같다.

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										
(단위 : 백만원, %)										
계정과목		추가경정예산(안)					본예산		증감	
		등록금 회계(a)	비등록금 회계(b)	내부거래 제거(c)	금액 (A=a+b-c)	구성비율	금액 (B)	구성 비율	금액 (C=A-B)	증감률 (C/B)
수 입	등록금수입	30,688	1,235	0	31,923	53.7	31,682	55.1	241	0.8
	전입및기부수입	0	22,208	2,540	19,668	33.1	18,485	32.1	1,182	6.4
	교육부대수입	0	2,517	0	2,517	4.2	2,585	4.5	-68	-2.6
	교육외수입	123	807	0	930	1.6	975	1.7	-45	-4.7
	투자자기타자산수입	0	1,655	0	1,655	2.8	1,916	3.3	-261	-13.6
	고정자산매각수입	295	0	0	295	0.5	2	0.0	293	12743
	고정부채입금	0	28	0	28	0.0	90	0.2	-62	-68.9
	미사용전기이월금	1,389	1,035	0	2,423	4.1	1,804	3.1	620	34.4
	합 계	32,495	29,485	2,540	59,440	100.0	57,540	100.0	1,900	3.3
지 출	보수	18,120	2,689	0	20,809	35.0	20,252	35.2	557	2.8
	관리운영비	4,329	1,007	0	5,336	9.0	5,004	8.7	332	6.6
	연구학생경비	7,749	20,703	0	28,451	47.9	27,301	47.4	1,150	4.2
	교육외비용	160	10	0	170	0.3	165	0.3	5	3.0
	전출금	1,700	840	2,540	0	0.0	0	0.0	0	0.0
	예비비	30	20	0	50	0.1	50	0.1	0	0.0
	투자자기타자산지출	0	2,790	0	2,790	4.7	2,635	4.6	155	5.9
	고정자산매입지출	408	1,217	0	1,625	2.7	2,000	3.5	-375	-18.8
	고정부채상환	0	70	0	70	0.1	100	0.2	-30	-30.0
	미사용차기이월금	0	139	0	139	0.2	33	0.1	106	321.2
	합 계	32,495	29,485	2,540	59,440	100.0	57,540	100.0	1,900	3.3

- 의원들이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(안)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자문내용이 없으므로 자문사항을 마친다.

간서명	의원		의원	
-----	----	--	----	--

다. 회의록 수리

- 제13기 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참석의원 전원이 빔프로젝트 화면을 통하여 읽어본 후, 의장이 수리여부를 물으니, 그대로 받자는 ○○○ 의원의 동의와 ○○○ 의원의 재청에 전원이 찬성하여 금회 회의록을 수리하다.

라. 대표 간서명자 선임

- 회의록에 대한 대표 간서명자로 ○○○ 의원, ○○○ 의원을 선임하자는 ○○○ 의원의 동의와 ○○○ 의원의 재청에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2명을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다.

마. 폐회

- 기타 다른 의견이 없어, ○○○ 의원의 폐회 동의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1시 30분이 되다.

붙임 : 회의자료 1부. 끝.

2019년 10월 21일

계명문화대학교 제13기 대학평의원회

(※ 성명과 서명의 미표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)